

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개월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기관명	전화번호	
	주소		
	사업 내용		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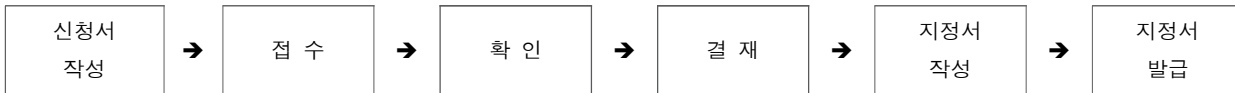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행정안전부